

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(신규) 동의안

의안 번호	195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5월 3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「도로사업소 테니스장」은 당초 직원들이 이용하던 테니스장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테니스 운동을 생활체육으로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

나. 테니스장을 관리·운영함에 있어 항상 경기에 적합한 최상의 코트 관리와 초심자 테니스 강습프로그램 운영 등 테니스장 관리·운영 사무 전반에 대한 민간의 숙련된 경험과 전문적 관리 능력·기술 등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

다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위탁사업 :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·운영
- 위탁대상 : 동부·남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(총 4면)
- 위탁방식 : 자립형 민간위탁
- 위탁기간 : 2024.8.1.~2027.7.31.(3년)
- 수탁기관 선정 방법 : 공개모집

- '25년 소요예산(안) : 운영비 지원 없음(자립형으로 이용료 수익금 등으로 운영)

나. '24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(권고)

〈 권고내용 〉

1. 시설이용이 특정인·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관리 철저
2. 유사시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 산정 및 수탁기관의 과도한 수익 추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

다. 위탁내용

- 테니스장 이용자 예약관리 및 이용료 징수 등 이용자 관리
- 수준별 강습 프로그램 운영
- 코트, 대기실, 조명시설 등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(점검·정비 등)
- 테니스장 이용 관련 민원처리
-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 등

라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(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)
 -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 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- 테니스장 이용 서비스 제공은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촉진하는 것임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할 필요성이 있으며,
 -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테니스장 이용자 관리부터 시설정비, 강습프로그램 운영 등 테니스장 관리·운영의 전문성 및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(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)

제8조(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)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.

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 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

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·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시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
- 1의2.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
2.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
3.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 및 운영 지원
4.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내·외 교류 지원
5. 자치구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지원
6.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
7.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
8.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관내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
9. 시민의 체력 증진 활성화 및 사업 지원
10. 그 밖의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양재신 (☎ 2133-8160)